고 시

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009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(남양주양정역세권 S-10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S-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남양주양정역세권 S-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공공분양)
2. 사업시행자
   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   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
   ○ 대 지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일원(남양주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S-10BL)
   ○ 사 업 면 적 : 44,721.00㎡
   ○ 대 지 면 적 : 44,721.00㎡
   ○ 연 면 적 : 131,946.10㎡
   ○ 사 업 규 모 : 아파트 17개동(공공분양 943세대, 지하3층~지상22층) 및 부대·복리시설
   ○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4. 사 업 비 : 428,294,014천원 (주택도시기금 88,670,000천원)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30. 03.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,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(02-6908-9057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